

## 형사법 하나

**이재상** 박사

변호사시험 대비  
출제경향 분석 및 공부방법론

###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사례형 문제 총평”

#### 1. 선택형 문제

(1) 선택형 문제는,

- ① 형법 영역에서 19문제(47.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2문제(30%),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9문제(22.5%)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8회 변호사시험에 형법이 1문제 늘어나고, 통합형 문제가 1문제 줄어든 것으로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 ②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7문제, 각론 10문제, 총·각론을 결합한 유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제8회 변시에서는 총론 10문제, 각론 7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각론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 ③ 특별형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에서 판례와 관련된 지문들이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출제된 지문들은 워낙 형법과 관련이 깊은 것들이어서 출제가 예상되던 것들이었습니다.
- ④ 그리고 제6회, 제7회에서는 형벌론과 관련하여 실무형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그 난이도가 너무 높아 주어진 시간 내에 풀기가 매우 어려웠으나, 제8회와 제9회에서는 형벌론 문제가 출제되었으나, 난이도가 너무 높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 ⑤ 순수한 객관식 사례형 문제는 지난 제6회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고, 제7회에서는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8회 시험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제9회 문제에서는 무려 4문제가 출제되어 객관식 사례형 문제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례형 문제를 풀면서 추출해야 하는 쟁점들이 그대로 지문화 되는 방식이어서 사례형 문제를 잘 푸는 수험생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동시법의 특례’를 다룬 객관식 사례 문제는 그대로 사례문제로 옮겨 놓아도 최상위 난이도의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 ⑥ 9회에 걸친 변호사시험을 거치면서 이제는 형법 전 영역에서 순수이론과 판례, 그리고 실무적인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문제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여타 국가시험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게 상승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⑦ 특이한 점에 우연방위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등과 같은 순수 이론지문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순수한 형법이론 보다는 판례의 내용을 물어보는 형식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 ⑧ 그리고 2019년 법전협이 주최한 전국 모의시험와 연계된 판례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었으며, 그 외에도 법원행정고시 등에서 출제된 판례지문들도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지난 몇 년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⑨ 이제 번시를 대비해서는 위의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은 형법 고득점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하여 2019년도 최신 판례는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미 법무부의 예고대로 된 것으로 최신 판례 보다는 평소 중요한 핵심판례 위주로 수험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준강간의 불능미수'에 대한 최신 판례는 이미 예상했던 바와 같이 3개나 되는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 ⑩ 형법, 형소법 통합형 문제는 모두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정도의 난이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 ⑪ 지난 1-4회 시험들에 비하여 5회부터 시작하여 6-9회 시험에 이르기까지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였고,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굳어 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법이론과 판례를 다면적으로 보는 학습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 2.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55점, 형소법 45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제8회 시험과도 동일한 출제형태입니다.

제1문에서 ① 모욕행위와 공연성 ②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③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④ 인과관계의 착오, 비유형적 인과과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⑤ 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와 상해의 고의를 가진 자의 공동정범 여부 ⑥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은 지난 8회에 이어서 2년 연속 출제된 쟁점인데, 2년 연속 출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과관계의 착오와 관련하여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는 乙과 상해의 고의만 있는 丙이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C에 대하여 각각 범행을 하였을 경우, 두 사람의 공범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인과관계의 착오의 법적 효과가 상해의 고의만을 가지고 있는 丙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아주 어려운 쟁점입니다.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는 丙이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하면서 상해의 실행의 착수로 나갔는데, 외견상으로는 무식하게 건강해 보이지만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는 C가 기절을 한 경우 상해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묻는 쟁점도 매우 높은 수준의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제2문에서는 ① 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재죄 ② 착오송금과 횡령죄의 성부, 횡령죄와 법률의 착오,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에 대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교사범의 성부와 공범과 신분의 문제,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횡령)죄 ③ 횡령교사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및 죄수 ④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의 죄의 성부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위 쟁점들은 모두 이번에 처음 출제된 쟁점이며, 지난 제7회에서 단일 쟁점사례인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의 죄책, 제8회 시험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기와 도구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9회에서도 학교운영권의 양도 및 교사의 부정채용과 관련된 배임수재죄의 성부가 단일 쟁점사례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일 쟁점사례는 법원행시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출제방식인데, 변호사시험에서 벌써 3차례나 출제된 형식입니다. 주로 선택형, 객관식 문제로 출제가 예상되었던 판례사례가 더 나아가서 사례문제로 출제되는 형식으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지 못하면 도저히 답안작성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이번 형법 사례문제의 난이도를 상승시킨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착오송금과 횡령죄의 성부를 물어보면서 丁이 丙을 법률의 착오에 빠뜨리는 등 丙에 대한 의사지배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丁이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에 대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약 丁이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경우, 무엇을 근거로 丁이 丙의 범행에 대하여 교사범이 될 수 있는지를 공범과 신분을 엮으면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1~9회 출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형 문제의 주요 특징은,

- ① 예년에 비교하여도 문제출제의 완성도가 더욱 더 향상하였으며, 각 쟁점들의 중요도나 그 난이도에 있어서도 최상급의 것들이 엄선됨으로써 형법 전반에 대한 기초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 ② 제1문과 제2문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들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고의 난이도를 가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문과 제2문에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이 고루고루 균형이 이루어 출제됨으로써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을 아주 세련되게 잘 다루었습니다.
- ④ 돌이켜보면 지난 제1~4회 시험에서는 각론 위주로 출제되었으나, 제5~8회 시험부터는 쉽지 않은 내용의 총론의 쟁점들이 전면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출제경향은 이번 제9회 시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⑤ 그리고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법 쟁점들을 서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시켜 완전히 다른 쟁점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고도의 출제기법들이 선보였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상당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형법 공부방법론”

### 1. 총평

- ①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②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나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③ 지난 6회 시험부터 계속 이어져 온 출제경향이지만 이번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사례형 문제는 제1문과 제2문 모두 형법총론과 각론을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하여 출제되었는데, 그 만큼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가 많이 상승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향후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하 세부적인 공부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 2.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최근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위주로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수험생들은 기본서를 선택할 때에도 기본서의 전체 분량이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면서도 최대한 많은 분량의 판례를 수록한 교재를 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판례도 중요판례 위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변이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모든 기출판례에 변이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등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가 누적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의 중요도를 바로 손쉽게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서가 중요합니다.

#### 4. 선택형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 형법이론은 이론문제의 형식으로도 출제됩니다.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출제경향은 난이도 높은 이론문제에 있어 그 내용은 물론이고, 학설에 대한 비판점까지도 세세하게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수험생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형법이론도 그 분량이 너무나 많은 만큼 판례와 마찬가지로 출제 빈도수가 높은 중요 형법이론과 쟁점 위주로 일목요연하면서도 알기 쉽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론 부분에 있어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매우 까다로운 부분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득점에 중요 변수가 되곤 합니다. 기출지문들을 자주 학습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5. 사례형으로 출제된 판례쟁점은 반드시 선택형문제로 또 나옵니다.

사례형 문제는 반드시 판례 중 Leading Case, 즉 A급 쟁점 위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leading case는 사례형에서 뿐만 아니라 선택형에서도 중복 출제됩니다. 예컨대, 제1회, 2회 변호사시험에서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1), 신용카드범죄(2), 승계적 공동정범(2),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상해의 문제(1), 합동범에서 합동의 의미와 현상성이 없는 주모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2), 불법원인급여와 재산범죄(3), 협박죄의 기수시기(2),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2),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1), 증언거부권과 위증죄의 성부(1),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1) 등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이 쟁점들은 위에서 괄호에 기재한 수만큼 선택형 문제로도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제8회 시험에서의 경향을 살펴보면, ‘합동절도’는 사례형 문제로 제2, 6, 8회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되었고, 객관식 문제로는 제1, 2, 6, 7, 8회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제8회에서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하여도 객체의 착오인지 여부’는 제3, 6회 시험에서는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더욱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하여도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의 문제’는 제7회에서는 객관식, 제8회에서는 사례문제, 제9회에서는 다시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기록형 사례로 출제된 ‘보이스피싱 사기죄와 횡령죄’의 쟁점은 제8회 변시에서 객관식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결국 판례의 Leading Case의 학습은 사례형, 선택형을 동시에 대비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것입니다.

#### 6. 단일 쟁점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제7회(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의한 약속어음 발행)와 8회(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제9회(학교운영권의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성부) 변시에서 연속하여 출제된 형식입니다. 배점도 5~10점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사례형 문제로도 출제될 만한 내용을 담은 판례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순환별 강의를 통하여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답안지에 쓰는 법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 7. 사례풀이의 기본틀을 익혀야 합니다.

사례형문제의 난이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시험의 당락을 물론, 고득점합격에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형문제를 풀어내는 기본틀을 반드시 연습하여야 합니다.

이하 사례형문제를 푸는 방법론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① 사실관계의 분석

사실관계의 분석은 사례해결의 출발점이다. 사실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 \*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명백한 사실관계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 애매한 사실관계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해서 분석한다.

### ② 사안에 관한 쟁점의 정리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주어진 사안에서의 쟁점을 검토할 순서에 따라 개념적으로 추출·정리하여야 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논점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여 그것만 열심히 분석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빠뜨려서는 안 되는 논점을 제외한다면 답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본인의 노력에 비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 ③ 사안의 체계적 검토와 쟁점에 대한 해결

범죄체계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가벌성 여부를 심사·확정해 나가며 그 과정속에서 쟁점들을 해결한다. 위법성과 책임은 사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언급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면 된다.

사안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여 그에 따라 범죄의 성부 내지는 그 근거가 달라지는 곳에서는 실무위주의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학설의 소개는 최소화하고, 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릴 경우 무난한 답안이 될 수 있다.

### ④ 결론과 죄수관계

결론 그 자체보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논증과정의 중요하므로 이를 간단히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여러 범죄가 성립한 경우는 반드시 그들 사이의 죄수관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 모의고사 적중 사례

**이재상** 박사  
 제9회 변시 형법 기출  
 학원 모의고사 적중 부분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1** 공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제3자에게는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 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
- ㄴ.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으며,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방해범행을 공동으로 하였음이 인정되는 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
- ㄷ.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다면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제3자가 공무원의 제3자 뇌물공여행위를 방조한 경우, 제3자 뇌물공여방조죄 성립. **법735**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해설 |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판 2017.5.30. 2017도4578).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재산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 乙이 본범(채무자, 양도인) 甲의 교사에 따라 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乙의 행위는 본범 甲을 도피하게 하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고, 교사자 甲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2 범죄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무유기죄는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위법한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다. (○)
- ②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해약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약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해야 한다. (×)
- ③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 ④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 ⑤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직무유기죄는 즉시범이라고 할 수 없고, 유기행위의 계속으로 위법상태도 계속되기 때문에 본죄는 계속범이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직무유기죄는 범죄가 기수에 달하는 순간 위법상태도 종료되기 때문에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이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험범이 아니라 결과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약의 고지가 상대방에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약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되고, 해약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박죄의 미수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해설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대판 1986.7.8. 84도2922).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도주죄는 즉시범이므로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에 도주죄의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8 法行33·37 法欄6·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고,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해설 |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의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한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5.26. 2005도7528).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3** 2018. 9. 1.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2019. 2. 1. 불구속 기소된 **甲**이 변호사 **乙**을 찾아와 2019. 4. 3. 상담을 하면서 나온 다음의 대화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 : 2017.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나요?
- 乙** : (ㄱ)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 甲** : 2019. 5. 10.이 지나서 선고를 받게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乙** : (ㄴ) 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甲** : 이번에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9. 5. 10. 이전에 그 판결이 확정되면 제가 2017년에 받은 집행유예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 乙** : (ㄷ)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므로, 원칙적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해야 합니다. (○)

**문 4**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21:25경 자신의 약혼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하여 인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乙**이 **甲**의 차를 **乙**의 회사 직원이 타고 가는 차로 오인하고 차도로 나와 **甲**의 차를 세워 타려고 하였다. 이에 **甲**이 항의하자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고 끌어당겨 **甲**의 바지를 찢어지게 한 다음 **甲**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甲**과 함께 넘어졌다. **甲**은 약혼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3분 가량 **乙**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있었다.

- ① 위 사례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甲**의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므로 **甲**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사례> [1] **甲**은 2014년 11월 5일 절도죄를 범하고, 연이어 2014년 12월 1일 상해죄를 범하여 2015년 3월 5일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다시 2015년 7월 12일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체포되었는데, 이전에 범한 절도죄가 발각되어서 2015년 7월 27일 절도죄와 특수폭행죄로 각각 기소되었다.
-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확정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새로이 범한 죄는 여기서 집행이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것이 되고,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새로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그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과실로 범한 죄로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아니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乙**이 **甲**이 운전하는 차량 앞에 뛰어 들어 함부로 타려고 하였다. **甲**이 이에 항의하자 **乙**은 **甲**의 바지춤을 잡아 당겨 찢고 **甲**을 끌고 가려다가 넘어지자, **甲**이 **乙**의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3분간 잡아 누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5 재산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회사에서 회사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몰래 자신의 저장장치로 복사한 경우,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이 될 수 없다. (×)
- ② 협박으로 금전채무 지불각서 1매를 쓰게 하고 이를 강취한 경우, 사법상 유효하지 못한 위 지불각서는 강도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
- ③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없다. (×)
- ④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중 일부를 인출한 돈은 장물죄의 객체가 된다. (×)
- ⑤ 민사집행법상 보전처분 단계에서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 불성립.

법6 法行31 法模6·18·19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甲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USB에 복사하고 이를 프린터로 출력해 간 경우 甲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강도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사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피고인이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하였다더라도 피해자가 그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강도죄의 기수가 인정될 수 없다.

해설 | 강도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대판 1997.2.25. 96도3411). → 사법상 유·무효 불문.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에 응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A가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B에게 교부한 경우, B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사이버 25시 PC방종업원 丙은 손님 변호사 乙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를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는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乙의 현금카드를 5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만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3만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그런데 PC방 주인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변호사인 乙이 몰던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乙이 거액의 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甲은 쓸데없이 변호사를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에 거래관계 때문에 알게 된 C 회사의 ID와 PasswOrd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C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6** 동시범의 특례(「형법」 제263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함께 A를 폭행하는 甲의 연락을 받고 달려 온 B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B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 ㄴ. A가 행인 甲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른 행인 B로부터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으나 사망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B는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
- ㄷ. A가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얼마 후 B가 甲과 의사연락 없이 A를 폭행하자 A가 B의 계속되는 폭행을 피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사망하였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어 甲과 B는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로 수 천 만원을 이체한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이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이 돈을 B에게 주었다. 그런데 B은 이 돈의 출처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사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⑤ B가 甲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포함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형법 제327조에서 정한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甲은 2시간 전에 B의 폭행으로 부상을 당하여 의자에 누워있던 C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C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甲, B 중 누구의 행위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甲은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된다. [㉮]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 각 행위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행위가 경합하여 하나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발생의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 해설 |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7.11.28. 97도1740).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원인관계가 판명된 경우 각자의 인과관계에 따라 처벌(대판 1983.9.27. 83도1787) :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일인에 대하여 강간을 시도한 자 중의 1인의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7** 甲은 밤 10시경 절취의 목적으로 피해자 A가 집에 없는 틈을 타 드라이버로 A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A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에게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아간손괴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
- ② 만약 위 사례에서 甲이 현관문을 부순 시점에 집으로 돌아오는 A에게 들켜 도망간 경우, 아직 A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아 절도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
- ③ 만약 乙이 甲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甲이 범행 후 훔친 귀금속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자 乙이 이를 수락하고 귀금속을 교부받아 갖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乙에게는 절도교사죄 이외에 장물보관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 (×)
- ④ 만약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가지고 나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후 현금카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은 경우, 현금카드에 대한 절도죄와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 ⑤ 만약 甲이 A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A 몰래 가져간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은 등록명의를 기준으로 하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타방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 원인관계가 판명된 경우이므로 강간미수의 죄책만 진다.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 : [상해행위를 피하려다가 차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도로를 건너 도주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치사죄 성립된다(대판 1996.5.10. 96도529).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甲은 2015. 11. 3. 01:00경 건축자재 등을 훔칠 생각으로 乙과 함께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乙은 망을 보고 甲은 컨테이너 박스 앞에 놓여 있던 노루밭뽕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컨테이너 박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순 혐의로 기소되었다. 위의 사례에서 만약 乙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甲의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1항(아간손괴침입절도)에 해당하므로 손괴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甲에게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야간에 절도목적으로 출입문의 자물통고리를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견된 경우, 특수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됨. 〔解〕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甲과 乙이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죄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횡령(절도)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절도)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성립. 〔法模5·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곧바로 반환한 경우,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반환한 경우 경제적 가치 감소가 없어서 절도죄 불성립. 〔解7 法行37 法模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문 8**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 ②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 ③ 심신장애의 유무는 사실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
- ④ 성주물성애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 ⑤ 사회통념상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

▶ 절취 또는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행위, ㉠ 절도죄 성립하고, ㉡ 컴퓨터등사용자기죄는 불성립.

법4·5·8 法行37 法模5·16·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에 대한 명의신탁물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가공이 밝혀지더라도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제3자와 수탁자와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 법3·4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 법模14·17·18·19 司55·5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자신에 대한 강도상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종 일관 부인하였으나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이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자신의 강도상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 성립. 법1·3·6·7 法行3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의사의 감정서에 심신상실이라는 기재가 있다면 법적·규범적 관점에서도 감정서의 기재대로 심신상실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이 조각된다. (○)

문 9 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다. (○)
- ②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나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지미수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 ③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 ④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법원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칠 필요 없으며 또한 전문가의 정신감정결과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함.

辨6 法行33·35 法模15·16·17·18·19

〈3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법원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성주물성애증의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소아기호증이나 성주물성애증 등의 증상이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있음.

辨4 法行33 法模14·19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때문에 도저히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이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여러 차례 찌르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왔고,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행위를 중단하였다면,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중지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하였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할 당시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기수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 구별된다. 法模9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⑤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인식한 사정과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 문 10** 甲은 원한관계에 있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한밤중에 A의 집으로 가서 A와 A의 딸 B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A의 집을 방화하였다. 이로 인해 A는 질식사하였고 B는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였으나 甲이 밖에서 현관문을 막고서는 바람에 B도 질식사하였다. 甲의 죄책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다. (○)
  - ② A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죄책을 진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甲은 철천지원수인 乙을 살해하기로 작정을 하였다. 乙이 매일 새벽 동네 약수터에서 운동을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甲은 아직 어두움이 거치지 않은 새벽에 총을 들고 약수터로 향하였다. 멀리서 운동을 하고 있는 乙을 발견한 甲은 유효사거리 50m, 최대사거리 80m라는 것이 일반에 널리 알려진 총으로 乙에게 사격을 가하였는데, 눈이 매우 나쁜 甲은 甲이 30m 전방에 있지만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乙은 100m 전방에 있었고 일반인은 이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었다. 甲이 쓴 총알은 당연히 乙에게 미치지 못하였다. 위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으로만 모아 놓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측면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법3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불능범과 구별되는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인 '위험성'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법1·2·4 法行32·36·37 法模16·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케 한 경우에도 인정되는 개념. **법3 法模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예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중체포·감금죄 등이 있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乙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乙이 거주하는 주거에 방화하였고, 乙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질식사하여 사망한 경우 甲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외에 살인죄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③ B를 사망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경합 관계에 있다. (○)
- ④ 만약 甲이 A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 A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A를 살해할 목적으로 A의 집을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 ⑤ 만약 甲이 A의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잠을 자고 있던 A가 집 밖으로 뛰어나와 불을 끄는 바람에 A의 집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

**문 11**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수 없음. 法行36 司53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가 거주하는 주거에 방화하였는데, 불타고 있는 주거에서 乙이 빠져나오려 하자 방문에서 가로막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乙이 불에 타서 숨지게 하였다면 甲은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해군사병이 집에 불을 놓고 독립연소에 이른 상태에서 빠져 나오는 피해를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甲이 A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A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辯3·6·7·8 法行31·32·33·34·37 法槌15·17·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甲이 공장 안에 있는 A를 살해할 의도로 공장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순간, 공장 안에 있는 A가 이를 보고 밖으로 뛰어나와 막는 바람에 공장에는 불이 붙지 않았으나, 甲과 A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가 자신의 옷에 뿌려진 휘발유로 인해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라면 甲의 죄책은 어떠한가?

甲에 의해 불이 일단 점화 또는 발화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그리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의 기수·미수는 불문하는 것이므로 비록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미수에 그쳤으나, A가 화상을 입고 사망한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를 구성한다.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경우 :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제적 경합 관계에 있다. (×)
- ②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제적 경합 관계에 있다. (○)
- ③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제적경합 관계에 있다. (○)
- ④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실제적경합범으로 처단된다. (○)
- 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죄와 변호사법 내지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대판 2008.2.28. 2007도10004).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은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 변호사법위반(알선수재)과 동일한 법리.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는 실제적 경합. **[법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고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강도가 1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힌 경우 각 피해자별로 수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들은 실제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7.5.26. 87도527).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法行3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12** 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
- ㄴ.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는 별도로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ㄷ.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말하면서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 ㄹ. 사기도박으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 ㅁ.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으면서 일부 대가를 지급한 경우, 편취액은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 (○)

**문 13**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친족상도례는 공갈의 죄 및 장물에 관한 죄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강도의 죄 및 손괴의 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② 범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범인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사기죄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소극적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묵비하여 이에 속은 타인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이미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등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한 경우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 불성립. [법7 제3 Case]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이 제2의 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이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 명의신탁도 동일한 법리.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사기도박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사기도박을 위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법7 法模7·19]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친족상도례는 강도죄, 준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와 준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에는 적용 없음. [법6 法行30 司5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다음 중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였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③ 사기죄의 범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범인의 배우자였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횡령죄와 관련하여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간에 「형법」 제328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
- ⑤ 甲이 乙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자신과 동거하지 않는 삼촌 丙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경우, 丙의 고소가 없더라도 甲을 절도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문 14**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하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 ㄴ.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일 필요가 없다. (×)
- ㄷ. 청탁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그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 (사기죄)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사돈은 친족이 아니므로 친족상도례의 적용 없음.  
법7 法行30·34·35 法模5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다음 중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사안 (사기죄)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혼인이 무효인 경우 사기죄에 대한 친족상도례 적용 없음.  
法行34 法模1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다음 중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마. 乙은 피고인의 삼촌인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乙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위 돈을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 (횡령죄)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횡령범이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위탁자 중 한쪽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없음. 법7 法行34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절도범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없음.  
법7 法行30·35·37 法模15·17·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甲이 乙로부터 A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어 A건설 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한 이후에 실제로 건설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甲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2.7.13. 82도874).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단순히 규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청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ㄹ. 부정한 청탁을 받고 나서 사후에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청탁의 대가이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ㄻ.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요구 또는 약속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

문 15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법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 ②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가수에 이른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근저당권과 관계없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법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 (○)
- ③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약정이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사기죄 이외에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
- ④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절도 등 범행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던 甲이 본범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면, 본범이 범한 당해 절도범행에 있어서 정범자(공동정범이나 합동범)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甲의 장물취득행위는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 ⑤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자동차 관리법위반행위는 절도범행의 불가법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한 경우, 그 재물의 수수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만이 아니고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사이버 25시 PC방종업원 丙은 손님인 변호사 乙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카드를 2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는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乙의 현금카드를 5만원을 인출한 후 그 중 2만원만 乙에게 건네주고 3만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그런데 PC방 주인 甲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변호사인 乙이 몰던 외제차와 접촉사고를 일으켰는데, 乙이 거액의 수리비를 지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甲은 쓸데없이 변호사를 자극할 필요는 없었다는 생각에 거래관계 때문에 알게 된 C 회사의 ID와 PassOrd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C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수 천 만원을 이체한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이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이 돈을 乙에게 주었다. 그런데 乙은 이 돈의 출처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사례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④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법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불가법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임. 判3·5·8 法行35 法模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침으로써 횡령행위가 가수에 이른 후 같은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시키거나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라면 이를 불가법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判4·5·8 法行30·33·34·35 法模5·16·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甲은 乙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아 관리하던 시가 2억 원 상당의 토지를 명의신탁자 乙의 승낙 없이, 2014. 3. 2. 丙으로부터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때 甲이 乙의 승낙 없이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리고 만일 甲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경우, 甲이 그 후 乙의 승낙 없이 제3자인 丁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행위는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러한 약정은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되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절도죄, 강도죄 등 재산범죄의 본범에게는 장물죄 불성립, **法理5**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본범의 단독정범, 공동정범, 합동범은 장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 **해설** | 장물죄는 타인(본범)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과 합동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대(대판 1986.9.9. 86도1273).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불가벌적 사후행위를 부정한 경우 → 실제적 경합 :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대판 2007.9.6. 2007도4739).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문 16**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의 교사·방조하에 乙이 甲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의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고 乙을 교사·방조한 甲도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 ㄴ.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 ㄷ.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

- ▶ 시청 건설과 사무관 甲은 건설중개업자 乙과 공모·결탁하여 B 건설회사와 적정한 공사금액인 50억원을 초과하는 52억원으로 계약금액을 부풀려서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전약정에 따라서 초과부분인 2억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동료공무원 丙이 甲의 비리사실을 알아채고 감사실에 내부자고발을 하자 甲은 丙을 만나서 왜 거짓사실을 날조하여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는지 모르겠다며 丙에게 격렬하게 항의하였다. 필필 뒤편 욕설을 해대는 甲의 태도에 丙은 살짝 겁이 나기도 하고 자기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여 미안한 마음도 들어서 그럼 나도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경찰서에 고발하면 서로 비기는 것이 되지 않겠냐며 甲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甲은 좋은 생각이라며 丙의 제안을 받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ㄹ.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면서 객관적으로 그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형사소추의 실익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ㄻ.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고죄가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아들여 관할 경찰서에 丙이 뇌물을 받았다고 신고하였다. 물론 丙은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사실 甲은 부하직원인 丁을 사주하여 건축자재비 착복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D에 의하여 목격된 바 있었다. 경찰이 甲이 연루된 자재비착복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자 甲은 丁 보다는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D가 이 사건에 관하여 경찰에 어떠한 제보도 하지 못하도록 D에게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돈을 보자 욕심이 난 D는 그 돈을 가지고 즉시 증거를 감추어 버렸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모아놓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ㄷ. 丙은 무고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는 교사·방조범 성립. [법30·35·3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자기 무고행위를 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 불성립. [법35·법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때, 무고죄 불성립. [법33·법6·19]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객관적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함. [법4]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나 이후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문 18**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므로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면, 그 후 그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
- ㉢.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하였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시험 업무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 ㉤.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경찰관들의 수사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변경된 경우,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무고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판례변경으로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 영향 없음.

법35 法模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사립학교의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출하였으나 이를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된 경우, 폭행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불가법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흡수되지 아니함. 법32 法模1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불가법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해설| 대판 2012.10.11. 2012도 1895. → 업무방해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 인정.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甲이 A초등학교 1학년 1반 교실 및 1학년 2반 교실 안에서 교사인 乙, 丙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인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수업을 할 수 없게 한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므로 甲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33 法模16·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 성적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사의 기관으로서 타인의 업무인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사장 이하 시험업무담당자 모두의 공모와 양해 아래 이루어진 부정행위, 위계 업무방해죄 불성립. 법36 法行3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20 문서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 ②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공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공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 ③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한다. (×)
- ④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 ⑤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작성명의인과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을 그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차용증상의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사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지방경찰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진정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과의 면담 등을 요구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죄 불구성. [법7 法行37 法模5·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허위로 선박 사고신고를 하면서 그 선박의 국적증명서와 선박검사증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某甲이 공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고 이를 이메일로 A에게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는데, A가 출력 당시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甲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행사한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乙은 길거리에서 만난 이동통신대리점 판촉사원 F가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만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공짜 스마트폰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포도샷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변경하였다. 乙은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F에게 보내는 이메일에 첨부, 전송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첨부파일을 컴퓨터화면상에서 열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스마트폰 단말기 1개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乙이 컴퓨터 스캔 작업 등을 통하여 만들어 낸 그 내용이 변경된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만든 행위는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法模16 司52]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컴퓨터 스캔 및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낸 후 이를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모니터 화면을 통해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문 23** (형법+형소법 통한 객관식 사례)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며 사기죄는 뇌물수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 ② 만약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乙**의 건설업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공갈하여 5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경우라면 공갈죄는 성립하나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그 이미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실질적인 채권채무관계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작성한 ‘차용증 및 이행각서’를 이용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7도629).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

-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法槌15·16·19]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某** 경찰서 형사반장 **甲**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설 정보팀의 운영비가 떨어지자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전과자 **乙**에게 뒷조사를 해서 구속시켜 버리기 전에 자기 정보팀에 돈을 기부하라고 하여, 이미 여러 번 그러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는 **乙**은 **甲**이 운영하는 사설정보팀의 팀장 **B**에게 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만약 **甲**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乙**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한 경우에는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1·6 法32 法槌6·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된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의 사례에서 ① **乙**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경우, **乙**에게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그리고 ② **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문 27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甲은 A로부터 5억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X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甲은 위 변제기를 지나 B에게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한편 甲은 아버지의 예금통장을 절취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甲은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변호인접견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그 이후 압수된 위 예금통장이 법정에서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A에 대한 대물변제계약 약정을 위반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
- ②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 ③ 만일 甲이 아버지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500만 원을 자신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경우 이는 별도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

문 30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 ① 甲은 乙과 공모하여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A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乙은 그 동안 망을 보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계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대물변제계약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 타인의 사무 아니므로 배임죄 불성립.

법4·8 法行33·34 法模15·16·17·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친척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한 경우 피해자는 친척 거래 은행이므로 친족상도례 적용 불가능.

법7 法行33 法模17·18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아버지 소유의 현금카드를 훔쳐서 이를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은행계좌의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甲은 택시강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 A로부터 A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A 소유의 현금과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았다. 甲은 B은행 하남지점에 이르러 같은 날 06:30 경 위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A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예금인출 항목 및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A의 계좌에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고, 잔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는 다시 위 신용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20만원을 甲 자신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甲은 다음 날 10:00 경 자신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F은행 안양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전날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20만원을 인출하였다.

甲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불법하게 계좌이체행위를 한 후 자기계좌에서 자기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법6·7 法行33 法模16·17·18 司52·5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인출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甲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 분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갑을 절도범인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다. 그 후 ㉠ 甲은 B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술값 50만 원을 결제하였는데, 이때 甲은 술값이 기재된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B에게 위 매출전표를 교부하였다. 甲은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甲은 법정에서 乙과의 범행일체를 자백하였으나 乙은 이를 모두 부인하였고, 한편 압수된 위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가 증거물로 제출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행위와 관련하여 만약 甲이 식당에서 절도범행을 마치고 10분가량 지나 20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도망가다가 뒤쫓아 온 A에게 붙잡혀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A를 폭행한 경우라면 甲에게는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 ㄴ. ㉠행위는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고, 각 죄의 관계는 실제적 경합범이다. (×)

**문 34**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甲과 乙은 길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출동한 경찰관 P가 甲과 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甲이 P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 P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현장을 벗어난 ㉡ 甲은 혈중알콜농도 0.1%의 상태에서 승용차를 타고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던 중 변속기를 잘못 건드려 자동차가 앞으로 약 1m 가다가 멈추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구성하고, 두 죄의 관계는 실제적 경합범이다.
- ② 甲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를 구성한다.

**문 35**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상습도박자인 甲은 도박의 습벽 없는 乙을 도박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포함한 4명이 참여하고 있는 도박에 가담하였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도박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 P1이 도박을 하고 있던 丙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丙은 휴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휘둘러 P1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사법경찰관 P2는 甲과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는데,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甲의 교사에 의해 도박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자백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가게 종업원을 속이고 물품을 구입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는 것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음주수치는 엄격증명의 대상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취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가 0.05%(현행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로서 그 혈중알콜농도가 특정되어야만 주취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판 1999.12.28. 98도138).

〈특별형법사례 특강〉

- ▶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자동차의 원동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4.23. 2004도1109).

〈특별형법사례 특강〉

- ▶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습도박의 죄와는 별도로 상습도박방조의 죄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상습도박죄에 있어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상습도박방조죄가 된다.

법3·5 法行33 法總51·6·17 司50·53·54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한편 甲이 수사과정에서 L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상습도박 혐의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L은 이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甲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는데, P2는 적법하게 그 자문의견서를 압수하였다. 기소된 甲과 乙이 병합심리를 받던 중 乙은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甲에게는 상습도박죄의 교사범이, 乙에게는 단순도박죄의 정범이 성립한다. (○)
- ㄴ. 丙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
- ㄷ. 만약 P2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乙이 사촌동생 丁을 시켜 乙이 아닌 丁이 도박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자수하도록 하였다면 乙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문 37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甲은 2019. 8. 1. A에게 X건물을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은 A로부터 2019. 8. 1. 계약금 2,000만 원, 2019. 9. 1. 중도금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甲은 2019. 11. 1. A로부터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9. 10. 1. B에게 X건물을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면서, B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2019. 10. 30. B에게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승용차로 단속경찰관을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甲은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는 물론 상해의 고의도 가지고 있었다.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강도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게 된 甲은 친구의 외제차를 빌려 새로 사긴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국도를 신나게 달리던 甲은 마침 약령 높은 연쇄 강간범인 일명 "발바리"가 경찰에 쫓기다가 근방에 출몰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임시로 설치한 검문소에서 경찰관 C의 불심검문에 걸려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甲은 경찰관 C의 검문에 불응하여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주행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C가 자동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정지신호를 보냈다. 甲은 체포되면 큰일이니 C가 다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자동차로 C를 치고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 인하여 C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중한결과적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법정형이 동일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이 성립한다. 甲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법·2·4·5 法行31·36 法模16·17 辯·6 司57 Case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사람이 동생을 경찰서에 대신 출두시켜 피의자로 조사받도록 한 행위,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함. 법·3·6 法模16·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친동생으로 하여금 그가 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A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은 甲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
- ㄴ. 만약 甲이 B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B로부터 계약금만 지급 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甲의 행위는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므로 A에 대한 배임미수죄에 해당한다. (×)
- ㄷ. 만약 甲이 A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증여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상황에서 B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라면,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 ㄹ. 만약 A가 甲의 사촌동생이고 甲의 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

**문 39**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甲은 동생인 乙과 공모하여 함께 丙을 상대로 토지거래허가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서 丙으로 하여금 금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 날인하게 하고 丙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 **【法行36】**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피고인이 자기소유 부동산의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만을 지급받은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배임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2차 매수인에게 계약금만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 부정됨. **【법1 法行37 法模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하는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한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부동산에 관해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마쳐 준 경우, 그 증여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경법과 같은 특별법위반죄에도 적용됨. **【법7 法行30·35 法模5·17】**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된다면 처분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 해 설 | (서명사취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甲이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이를 이용하여 丙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甲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을 丁에게 설정하여 주고 丁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

검사는 甲과 乙을 함께 공소제기하였다. 법정에서 甲은 변론 종료 후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검사는 甲을 위증 혐의로 소환하여 乙과 공범이며 법정에서 위증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丙의 재산상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甲에게 丙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③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증거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허위진술을 한 경우 항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
- ④ 만약 乙이 자신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고 甲에게 부탁하여 甲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면, 비록 甲이 친족인 乙을 위하여 위증한 것일지라도 乙에게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A의 소유 토지에 甲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한 경우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된 경우,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이때 피기망자가 처분 결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경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은 불필요. [法行35·36 法模18 司59 Case]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 위증죄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정신과 기능을 고려하여 볼 때, 형법 제152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 함은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유효한 선서를 한 증인'이라는 의미이고, 그 증인신문은 법률이 정한 절차 조항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게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 핵심 선택형 120제>

- ▶ 某 기업체 사장 A는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리과장 甲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丙은 수사를 하던 중 범인이 자신의 사촌동생 甲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甲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도망가도록 종용하여 甲은 재빨리 도주할 수 있었다.
- 그 후 甲과 丙은 체포되어 기소되었는데, 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될 것이 두려워 甲에게 자신이 도망가라고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도록 시켰다. 재판장은 甲이 丙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증거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甲은 재판정에서 증인선서 후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丙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丙은 도망가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만약 증거거부사유가 있는 甲이 증거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여 그 증거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라면 甲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2·5 Case 法行35 法橫16·17·18·19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某 기업체 사장 A는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리과장 甲을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丙은 수사를 하던 중 범인이 자신의 사촌동생 甲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후 甲에게 전화를 하여 빨리 도망가도록 종용하여 甲은 재빨리 도주할 수 있었다.

그 후 甲과 丙은 체포되어 기소되었는데, 丙은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파면될 것이 두려워 甲에게 자신이 도망가라고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도록 시켰다. 재판장은 甲이 丙의 친척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증거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을 하도록 하였다. 甲은 재판정에서 증인선서 후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한번도 丙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없고, 丙은 도망가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甲의 진술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丙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甲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한 행위는 자기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 법2·6·8 法行35 法橫16 司54·55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 - 형법 핵심 객관식 지문〉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문 40 (형법+형소법 통합 객관식 사례)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甲과 乙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丙을 찾아가 단속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뇌물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사무실로 돌아간 후 甲, 乙은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乙은 그 돈을 바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일주일 뒤 양심의 가책을 받아 丙에게 전액 반환하였다. 甲, 乙, 丙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은 뇌물로 받은 4,000만 원을 각자 2,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뇌물가액인 3,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자 형법상의 뇌물죄 적용을 받는다. (×)

▶ 수인이 공동하여 뇌물수수죄를 범한 경우에 특가법 제2조 제1항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수뢰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범자 전원의 수뢰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각 공범자들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나 분배받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99.8.20. 99도 1557).

〈1순환 형법 뇌물죄 정리 강의〉

▶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대판 1996.10.25. 96도2022).

〈1순환 형법 뇌물죄 정리 강의〉

▶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했다 하여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② 뇌물수수죄의 추징은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甲과乙에게는 각자 4,000만 원씩을 추징해야 한다. (×)
- ③乙은丙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은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 ④ 만약乙이丙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두 장을 뇌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한 후 현금 2,000만 원을丙에게 반환하였다면丙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 ▶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한 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했어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대판 1986.10.14. 86도1189).

<1순환 형법 뇌물쟁점 정리 강의>

- ▶ 자기앞수표를 뇌물로 받아 모두 소비한 후 액면 상당의 현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핵심지문총정리 ○×특강>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제 1 문〉

- (1)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甲이 학생 A와 B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훈계하자 A가 “이 아저씨는 누군데 간섭이야!”라고 말했고 화가 난 甲은 A에게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배워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것, 망할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종이 수첩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 그 후 A의 아버지 C는 甲을 경찰에 고소하고 학교장에게 甲의 파면을 요구하였고, 甲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2) 甲은 친구 乙,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C만 내대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울분을 토로한 후 乙과 丙에게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C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다. 사실 乙은 C와 원한관계에 있었고 건장한 C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C가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위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도 수락하였다.
- (3) 甲은 범행 당일 아침 乙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까 C에 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乙은 甲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당일 오후 경 乙은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丙은 안으로 들어가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丙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 (4) 밖으로 뛰어나온 丙이 乙에게 “큰일났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나자, 확인을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乙이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는 C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체은닉의 목적으로 C를 인근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C는 부검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1. (1)에서 甲의 죄책은? (15점)  
2. (2), (3), (4)에서 甲, 乙, 丙의 죄책은? (45점)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1. (1)에서 甲의 죄책

1. 모욕죄의 성립 여부

- ① **기출문제 쟁점** 모욕죄의 성립에 있어 ‘공연성’ - (10여 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② **기출문제 쟁점** 모욕행위 - (“배워먹지 못한, 이 싸가지 없는 것, 망할 년”)

**출제 문제**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첨삭 강의

| 사례36 | 모욕죄의 공연성 [法模14·18 Case]

甲과 乙은 같은 학교를 나온 동창관계에 있다. 그런데 甲이 친구들과 모인 술자리에서 자주 乙에 대하여 심한 험담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실을 전해 들어서 알게 된 乙은 甲의 집을 찾아가 甲의 아내 W도 있는 자리에서 “이 버려지만도 못한 놈! 어린 애들을 강간한 짓을 자랑하고 다니는 파렴치범인 주제에, 네가 인간이나!”라는 등의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 위 기출문제와 동일한 쟁점임. - 공연성은 부정됨.

2.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

- ① **기출문제 쟁점** 종이 수첩이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甲이 들고 있던 종이 수첩으로 A의 머리를 때렸다.)

**출제 문제**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시험(모의고사4회 문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한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거나 특이식물을 채취할 수 없게 된 甲은 커다란 재산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甲은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사장직에 있는 A에게 위협을 가하여 단체의 활동을 멈추게 하는 것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甲은 그 끝부분이 매우 날카롭고 뾰족하며, 날의 길이가 꽤 긴 송곳과 새의 사체를 포장한 다음 A의 귤구멍을 사안의 송곳을 사용하여 일자로 뚫어버리고, A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숲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폭파시키겠으니 속히 단체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편지를 동봉하여 택배로 A에게 우송을 하였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그 끝부분이 매우 날카롭고 뾰족하며, 날의 길이가 꽤 긴 송곳”은 특수협박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2. (2), (3), (4)에서 甲, 乙, 丙의 죄책

1. 甲의 죄책

- ① **기출문제 쟁점**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 (甲은 친구 乙과 丙에게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C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다. 甲은 범행 당일 아침 乙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술김에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니까 C에 대한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乙은 甲에게 거절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출제 문제**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첨삭 강의

| 사례25 |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법8 法模18 司57 Case

某 회사 팀장 甲은 회사 이사승진 심사에서 입사동기인 A에게 밀려 탈락하게 되자, A에게 엄청난 반감을 품게 되었다. 甲은 자신만큼 A를 싫어하는 부하직원 丁에게 甲과 丁이 우연히 알게 된 A의 불륜관계를 이용하여 공갈할 것을 丁에게 사주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甲은 마음이 바뀌어 丁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A를 공갈하는 것을 단념하라며 범행에 나아가는 것을 만류하였다. 얼마 전 A로부터 큰 모욕을 당한 바 있어 A에 대한 원한이 깊은 丁은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甲의 말을 듣지 않고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A의 불륜사실을 유포하겠다고 A에게 겁을 주어 A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A에 대한 甲과 丁의 죄책을 논하시오.

▶ 위 기출문제와 동일한 쟁점임.

- ② **기출문제 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 (甲은 친구 乙과 丙에게 “학교 앞에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C를 찾아가 며칠간 입원해야 할 정도로 혼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였다. ~ 乙이 기절하여 축늘어져 있는 C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체는 乙의 목적으로 C를 인근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C는 부검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성립 여부 - 甲이 乙과 丙에게 C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C가 사망을 하였다.

**출제 문제**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사례형 대면첨삭 강의

| 사례36 |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교사의 착오** 憲8 法模3·16·

18 司55·58 Case

탈세와 직원들의 임금착취를 밥 먹듯이 하는 某 기업의 1인 주주이자 악덕 사장인 甲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는 기사를 계속 써대는 신문기자 D에게 양값을 할 것을 결의하고 먼 친척 조카로 나쁜 짓만 골라 하는 丙에게 D를 혼내 주되, 평생 후회하면서 살도록 허리 아래 부분을 찌르고, 특히 허벅지나 종아리를 찌러 병신을 만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상해를 교사하였다. 이에 丙은 밤에 흉기를 들고 D의 집 근처 으스스한 골목길에 숨어서 D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丙은 밤늦게 귀가하는 D의 쌍둥이 동생 F를 D를 오인하여 상해의 고의로 흉기를 휘두르다가 잘못하여 F의 가슴을 찌러 F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甲과 丙의 죄책을 논하시오.

-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의 성립 여부 - 甲이 丙에게 D에 대한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丙이 사실의 착오를 일으켜서 D가 아니라 F가 사망을 하였다.

2. 乙의 죄책

- ① **기출문제 쟁점** 살인죄의 성립과 ‘인과관계의 착오’ - (사실 乙은 C와 원한관계에 있었고 건장한 C가 남들이 모르는 특이한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C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위 부탁을 받아들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丙도 수락하였다.~ 밖으로 뛰어나온 丙이 乙에게 “큰 일났다, 도망가자.”라고 말하면서 급히 현장을 떠나자, 확인을 위해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乙이 기절하여 축 늘어져 있는 C를 보고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사체은닉의 목적으로 C를 인근야산에 매장하였다. 그런데 C는 부검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출제 문제**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첨삭 강의(모의고사 1회 문제)

(A와 깊은 원한 관계에 있던 甲은 A를 살해하기로 결의하고, A의 집 근처에 숨어서 A가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드디어 A가 외출을 하자 A를 뒤를 밟기 시작하였다. A는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듯 한강 변 고수부지로 향하고 있었다. A가 인적이 한적한 곳으로 들어서자 甲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간 둔기로 A에게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하였다. 甲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A를 한강 물속으로 집어 던졌는데, 사실 단순히 기절만 하였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A는 이로 인하여 익사하고 말았다.)

**출제 문제**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시험(모의고사 1회 문제)

(날치기 범행도중에 A가 젊은 여성임을 알아차린 B는 갑자기 음욕이 발동하여 빠앗은 핸드백은 옆에다 던져 놓은 채 A를 강간하기 시작하였다. 강간하는 과정에서 A가 너무나 격렬하게 저항하여 강간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강간에는 실패하고 말았으나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B은 살의를 품고 A의 목을 계속하여 즐겼다. A가 더 이상 저항을 못하고 축 늘어지자 B은 A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근처에 있는 하천에 A를 유기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마치 술 취한 사람을 업고 가는 것처럼 기절한 A를 등에 업고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옆 골목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아무도 탑승하지 않고 있던 트럭이 비탈길을 굴러 내려오다가 가속이 붙으면서 A를 등에 업은 B을 덮치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하여 B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트럭바퀴에 몸통이 깔린 A는 끝내 사망하고 말았다.)

**출제 문제**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사례형 대면첨삭 강의 (모의고사 3회 문제)

(악덕 사채업자 A는 채무자 甲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엄청난 고리채를 부과시켜 甲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채무를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너무나 못 살게 굴자, 甲은 A를 살해하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채무를 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을 하고는 A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甲은 빚을 갚겠다고 하면서 A를 인적이 드문 강가로 유인한 다음, A가 무방비 상태인 틈을 노려 돌을 집어 들고는 A의 머리에 여러 차례 타격을 가하였다. 甲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A가 죽었다고 생각하고는 A를 강물 속으로 집어 던졌는데, 사실 단순히 기절만 하였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A는 이로 인하여 익사하고 말았다. 그러나 甲은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A가 자신의 채권·채무관계를 장부에 꼼꼼하게 기록하여 아내인 B에게 보관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리 만무 하였다.)

- ▶ 3문제 모두 인과관계의 착오가 쟁점인 문제임.

3. 丙의 죄책

① **기출문제 쟁점** **상해치사죄의 성부 -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당일 오후 경 乙은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丙은 안으로 들어가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예상하지 못한 일에 당황한 丙은 C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 그런데 C는 부검결과, 매장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 ▶ 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순간 ①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예견하기 매우 어려운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② 乙이 C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C를 유기하여 C가 질식사하였다는 것 역시 예견하기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丙의 폭행(상해)행위와 C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丙은 상해죄의 죄책만을 진다.

**출제 문제**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첨삭 강의(모의고사 1회 문제)

(丙은 여자 친구 D를 한순간에 빼앗아 버린 C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인터넷에서 사제총을 만드는 법을 익힌 다음 사람에게 충분히 살상을 가할 수 있는 사제총을 만들게 되었다. 기회를 엿보던 丙은 적당한 때라고 생각하고는 C를 죽이려고 C가 근무하는 회사로 찾아갔다. 마침 회사 입구에서 C와 D가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본 丙은 C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총알이 빗나가서 목표로 했던 C가 아니라 D가 총을 맞고 쓰러졌다. D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으로 제대로 후송되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으나, 도로 위에는 며칠 전 내린 폭우로 인하여 갑자기 전대미문의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이 생겨났고, 병원 구급차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그 싱크홀에 빠지면서 크게 부서지는 바람에 D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다.)

- ▶ 丙이 살인행위를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병원으로 후송되다가 병원구급차가 폭우로 인하여 갑자기 전대미문의 엄청난 크기의 싱크홀에 빠지면서 크게 부서지는 바람에 D가 사망함.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출제 문제**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사례형 대면첨삭 강의  
(모의고사 2회 문제)

(甲은 자신의 친구 乙로부터 乙과 집안대대로 원한관계에 있던 B를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건네받았다. 甲은 B가 운전하며 출퇴근하는 모습을 수일간 관찰하여 계획을 세운 후, 사건 당일 어두운 지하주차장에서 B의 승용차로부터 하차하던 사람을 당연히 B로 생각하고 그의 복부를 칼로 수차례 찔렀다. 그런데 실제 甲의 칼에 의해 중상을 입고 쓰러진 사람은 B가 아니라 그의 직장동료인 C였다. C가 다량의 피를 흘리면서 甲에게 제발 살려 달라고 눈물어린 눈망울로 바라보며 간절하게 애원하자, 甲은 연민의 정을 느끼고 급히 C를 근처에 있는 某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 당직 의사 戊에게 "C를 꼭 살려 달라."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충분한 수술보증금 등을 원무과에 수납을 한 후 병원을 떠났다. 즉시 당직의 戊는 C에 대한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C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C가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병실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유독가스를 흡입한 C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 ▶ 甲이 살인행위를 하였으나 피해자 C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아 C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병실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다량의 유독가스를 흡입한 C는 결국 사망하였음.

(▶ 의쟁점들은 모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는 비유형적 인과과정의 문제임)

② **기출문제 쟁점**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 乙은 살인의 고의로, 丙은 상해의 고의로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C가 사망하게 하였다. ㉡ 丙은 乙과 공모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丙이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인가가 문제된다. ㉢ 丙은 C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丙은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상해죄까지만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출제 문제**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시험(모의고사 3회 문제)

(40대 초반에 직장에서 명퇴를 한 乙은 창업에 실패하여 엄청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급기야 乙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자신의 집에 불을 놓아 화재보험금을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편취하여 재기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을 형님으로 모시면서 따르는 甲과 丙을 불러 모아 함께 공모하여 가족과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을 지르고 보험금이 나오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다만 乙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차마 볼 수 없다며 범행현장에는 甲과 丙만이 가기로 하였다. 범행 당일 오후 甲과 丙은 승용차를 타고 乙의 집으로 간 다음, 甲은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망을 보고 丙은 집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다. 그런데 甲과 丙은 乙의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마침 乙의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던 B가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B는 연기에 질식사하여 그만 사망하였다.)

▶ 甲, 乙, 丙이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인가가 쟁점임.

4. 乙과 丙의 죄책 -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의 성부(당일 오후 경 乙은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丙은 안으로 들어가서 C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심장이 약한 C가 느닷없이 쓰러졌다.)

**기출문제 쟁점** 乙이 타인의 주거인 C의 귀금속 판매점 밖에서 망을 보고 丙은 C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판매점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거주자인 C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행위이므로 乙과 丙은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책을 진다.

**출제 문제**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첨삭 강의(모의고사 6회 문제)

(甲과 乙은 관상수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자,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G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심기어 있는 고가의 영산홍을 함께 훔치기로 모의를 하였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담장을 설치하여 외부와 그 경계를 구분하지 있지는 않았으나, 단지 주변 곳곳에 화단을 설치하였고, 여러 종류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어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었다. 오후 2시경 甲은 乙을 승합차에 태우고 영산홍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로 차를 몰고 가면서 乙은 승합차 뒤편에서 망을 보고 甲은 재빨리 나무를 뿌리 채 뽑아 승합차에 싣고 가되, 만약 아파트 경비원 등이 제지하면 甲이 그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乙이 망을 보는 동안 甲은 영산홍을 뽑으려고 그 주변 땅을 파해 친 다음 막 영산홍을 뿌리 채 뽑으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는 순간, 그때 마침 아파트 경비원 A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 甲을 체포하려고 하자, 甲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A의 손을 뿌리치면서 A의 가슴을 힘껏 밀어서 넘어뜨렸고, 乙은 이 광경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출행량을 놓았다.)

- ▶ 판례의 입장으로 단지 주변 곳곳에 화단을 설치하였고, 여러 종류의 수목들이 식재되어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서 주거인 위요지로 평가되는 아파트 단지 안에 甲과 乙이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

**출제 문제**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사례형 대면첨삭 강의  
(모의고사 2회 문제)

(丁은 고향 선배라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A가 집에 현금과 귀금속 등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마를 하다가 사귀게 된 친구들인 乙과 丙에게 자세한 범행실행방법과 평소 잘 알고 있던 A의 집 내부구조 및 도주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이를 훔치자고 제안하였다. 이미 중독수준에 이른 경마비용을 조달할 길이 막막했던 乙과 丙은 흔쾌히 이를 승낙하였다. 丁은 자신과 乙은 A의 집 담을 넘고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치기로 하고, 丙은 A의 집 앞에서 망을 보면서 도주할 차량을 대기시켜 놓으라고 하였다. 대담하게도 범행 당일 정오 무렵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사이 丁과 乙은 A의 집 인근에서 만나 범행할 기회를 엿보던 중, 甲은 서로 잘 아는 A의 집을 털었다가 쉽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乙에게 잠시 전화를 걸고 오겠다고 말한 후 몰래 도망가 버렸다. 乙은 丁이 도망간 사실을 丙에게 휴대폰으로 알려면서 “혼자라도 하겠으니 20분 후에 차를 약속한 장소에 대기시켜 놓아라”라고 한 후, A의 집 담을 넘어가 1억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A의 집 앞에서 차량에 타고 대기하고 있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 ▶ 합동절도인 乙은 물건을 훔치러 A의 집안으로 들어가고, 丙은 A의 집 앞에서 차량에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물건을 훔쳐서 집밖으로 나온 乙을 태우고 도주한 행위.
- ▶ (위의 사례 모두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문제임)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제 2 문〉

(1) A사립학교법인 이사장 甲은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A사립학교법인의 임원 변경 방식을 통하여 학교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전해들은 乙은 甲에게 연락하여 A사립학교법인의 운영권을 5억 원에 양도하고 자기를 A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乙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 甲에게 5억 원을 이체하기로 하였다. 乙은 이사장으로 선임된 직후 B로부터 A사립학교법인의 교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乙은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하여 丙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 자신의 계좌에 乙의 명의로 5억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려는 丙에게 친구인 丁은 아무런 근거 없이 “乙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라고 말하였다.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관철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3) 한편 甲은 乙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면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 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문자를 받고 겁을 먹은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1. 가. (1)에서 甲, 乙의 죄책은? (15점)
- 나. (2)에서 丙, 丁의 죄책은? (25점)
- 다. (3)에서 甲의 죄책은? (15점)

- 가. (1)에서 甲, 乙의 죄책
- 나. (2)에서 丙, 丁의 죄책

1. 丙의 죄책

① **기출문제 쟁점** 착오송금 - 횡령죄의 성부(乙은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하여 丙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 ~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관철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출제 문제** 진도별 형법사례 특강 39번 사례

(S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로 근무하는 丁은 某 주식회사 홍콩지점에 근무하는 경리과 직원 K가 丁 명의의 홍콩 상하이(HSBC)은행 계좌로 잘못 송금한 300만 홍콩달러(한화 약 3억 9,000만 원 상당)가 자기계좌에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로 모두 소비하였다.)

▶ 위 기출문제와 동일한 쟁점임.

**출제 문제**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시험(모의고사 5회 문제)

(甲은 K전자에서 업무비리를 저질러서 제대로 된 퇴직금도 못 받고 해직을 당한 후, 장기간 계속된 실업상태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곤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자산가 A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한 F가 현금 대출을 해주거나 수고비를 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甲을 유혹하여 甲 명의의 계좌를 F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를 받았다. 그 다음에, F는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에게 전화를 하여 A의 계좌가 마약사범들의 돈세탁 행위에 사용되었다면서 사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甲 명의의 계좌로 돈세탁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일정액의 현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계좌송금을 유도하였다. F에게 속은 A는 5,000만원의 현금을 甲 명의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였다. 자신에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W은행에서 A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 중 1,0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 사례에서 甲의 행위가 ① F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방조가 되는 경우와 ② 사기죄의 방조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송금인 A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F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지를 논하시오.)

▶ 甲의 행위가 F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방조가 아닌 경우 위 기출문제와 동일한 쟁점임.

② **기출문제 쟁점** 법률의 착오 -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乙은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하여 丙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 자신의 계좌에 乙의 명의로 5억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려는 丙에게 친구인 丁은 아무런 근거 없이 “乙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라고 말하였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착오송금의 경우 예금계좌명의인 丙은 송금인 乙에 대하여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면 횡령죄 성립.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관참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관참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에서 丙은 자신의 횡령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 즉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출제 문제**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탐사 강의(모의고사 3회 문제)

(그 후 A는 위의 범죄사실로 乙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의 수사를 받던 乙은 잠적을 하여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었다. 어느 날 乙이 길을 가다가 경찰관 P의 불심검문을 받게 되어 신원조회를 하던 중 A에 대한 범행으로 인하여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경찰관 P가 乙을 긴급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乙은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생각하고는 경찰관 P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다.)

- ▶ 乙은 위법성의 인식 없이 공무집행방해행위를 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출제 문제**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사례형 대면탐사 강의

| 사례36 | 법률의 착오 法槌14·17·18 司47 Case

평소 열혈 정의남을 자처하던 乙은 자신의 여자 친구가 대부업체의 돈을 빌려 쓰다가 사채 빚에 몰려 결국 성매매업소에서 윤락을 하게 되자, 사회의 癩의 存在들을 제거하는 것은 곧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니 자신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죄가 될 수 없다는 확신 하에 대부업체와 성매매업을 운영하는 B를 살해하기로 결의하였다. 乙은 업소에서 퇴근하는 B의 뒤를 밟다가 으스스한 골목길에서 흥기로 B를 찔러 살해하였다. 乙이 B를 살해한 행위의 죄책을 검토하시오.

- ③ **기출문제 쟁점** 특경법상 가중처벌규정의 적용 여부  
- (乙은 운영권 양수 대금인 5억 원을 甲의 계좌로 이체하려다가 착각하여 丙의 계좌로 잘못 이체하였다. ~ 丙은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 丙이 丁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금액은 5억 원에 달하므로 丙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출제 문제** 특별형법사례 특강 15번 사례

(A 건설회사(주) 대표이사에 취임한 甲은 A 건설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상가분양의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듯이 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외관만 그럴듯하게 쇼핑물 상가분양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를 진짜로 믿은 많은 수의 분양자들로부터 甲은 200억에 달하는 분양대금을 거두어 들었다. 甲은 상가분양대금 전액을 영득할 의사가 자신의 비밀계좌로 빼돌렸다.)

- ▶ A회사 대표이사 甲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은 200억에 달하므로 甲은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2. 丁의 죄책

(1) 丙의 횡령행위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 (乙은 자신의 계좌에 乙의 명의로 5억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고 돌려주려는 丙에게 친구인 丁은 아무런 근거 없이 “乙이 착오로 너에게 입금한 것이 분명해.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라고 말하였다.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관철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기출문제 쟁점** ① 丁은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테니까, 우선 내 계좌로 이체해.”라고 말하면서 丙을 사주하여 횡령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 간접정범의 성부가 쟁점임 ② 丙은 丁의 말을 듣고 막연히 관철을 것이라 생각하고 5억 원을 丁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 丁이 丙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지배 인정됨.

**출제 문제**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참석 강의(모의고사 3회 문제)

(C는 여대생 丙과 사귀고 싶어 밤늦게 귀가하는 丙을 따라 갔는데, 丙은 꽃다발을 들고 구매를 하기 위해 따라오는 C를 성추행범으로 착각하고 피하였다. 그러나 C가 계속하여 따라오자 丙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으나 C가 더 빠른 걸음걸이로 丙에게 접근하였다. 그런데 마침 丙의 친구인 丁이 길을 가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丙에게 C가 요즘 이 지역에서 자주 출몰하는 성폭행범, 일명 '발바라'임이 틀림없으니 어디 한 군데 부르뜨려서 C에게 정의의 뜨거운 맛을 어서 빨리 보여주라며 丙에게 충동질을 하면서 C를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제압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러자 더욱 두려움을 느낀 丙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각목을 주워 들고 C의 다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C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담에 부딪쳐서 두부손상을 입었다. 사실, 평소 남을 꿀탕 먹이는 것을 좋아하는 丁은 C가 丙을 짝사랑 하는 사람일 뿐,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도 못된 심보가 발동하여 丙을 곤경에 빠뜨려 꿀탕을 먹이려는 의도로 그런 짓을 한 것이었다.)

-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로서 엄격책임설을 취하는 경우 위 기출쟁점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됨.

**출제 문제**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시험(모의고사 2회 문제)

(남편 甲의 배신으로 치를 떨던 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찾으려고 골몰하다가 그만 명품중독에 빠지고 말았다. 어느 날 乙은 길을 가다가 앞서가는 B(女)의 팔에 걸친 핸드백이 고가의 명품백임을 한 눈에 알아보고는 B의 명품백을 훔치려고 B의 뒤의 뒤를 밟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B가 공공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을 고치고 있는 틈을 노려서 乙은 쩌싸게 B의 명품백을 훔쳐서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B가 도둑 잡으라며 乙의 뒤를 쫓기 시작하였고, 이 광경을 본 正義男 C가 乙을 붙잡기 위하여 乙을 뒤쫓아 거의 따라 잡게 되었다. 다급해진 乙은 지나가던 근육남 丁을 붙잡고 자신을 지독하게 따라 다니는 스토커가 성추행을 하려고 쫓아오고 있다며 이 스토커의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사정을 하였다. 무엇에 홀린 듯 乙이 눈물을 철철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에 낯이 나간 丁은 C가 진짜 丙을 지독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에 성추행범이라고 착각하고는 乙을 붙잡으려는 C에게 상해의 의사로 강펀치를 날려서 C의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

- ▶ 위의 사례문제와 동일하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빠진 자를 이용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임

(2)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가 여부

▶ 기출문제 쟁점

- ① 丁은 丙의 횡령죄에 대하여 간접정범이 될 것이지만, 횡령죄는 진정신분범으로서 비신분자인 丁은 丙의 횡령죄에 대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② 다만 丙은 법률의 착오에 의하여 횡령죄를 범한 것인바, 간접정범의 고의 속에는 교사의 고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丁은 丙의 횡령죄에 대하여 교사범이 될 수 있다.
- ③ 丁이 교사범이 된다면 비신분자인 丁은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에 교사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횡령죄의 교사범의 된다. - 공범과 신분.

출제 문제 진도별 형법사례 특강 18번 사례

(某 산부인과에서 책임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乙(女)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아버지 A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혀 거동을 못하였다. 평일에는 주로 乙의 어머니 B와 간병인이 A를 간병을 하지만, 주말에는 乙과 B가 번갈아 가며 A를 간병하였다.

乙은 어머니 B가 모처럼 친구들과 온천으로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A를 돌보기로 되어 있었다. 금요일 저녁이 되자 의사와 다른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하고 혼자 남은 乙도 뒷정리를 마치고 막 퇴근을 하려던 순간, 乙과 한 때 연인 사이이었던 甲이 유명 걸 그룹 멤버인 C를 데리고 병원 진료실 안으로 들어왔다. 甲은 처음부터 乙을 죽일 듯이 협박하면서 C가 임신 중이니 낙태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乙은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며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으나, C가 오히려 소속 기획사에서 알면 큰일이라며 제발 시술을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였다. 乙은 아버지 A를 간병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甲에게 설명하며, 만약 빨리 귀가하지 못하면 A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자신을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였다. 乙과 오래 사귄 바 있는 甲은 이러한 乙의 처지를 잘 알면서도 A가 어떻게 되든 자기 알 바 아니고, 말을 듣지 않으면 乙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乙은 A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甲의 포악한 성격을 볼 때 그가 정말로 자신을 해칠 수 있으니 목숨을 구하기 위해 별 수 없다고 생각하고 C에게 임신중절을 해주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乙이 시술을 하였던 탓에 너무나 오랜 시간이 소비되었고, 그 시간 내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 A는 하마터면 큰 위험에 처할 뻔하였다.) → 2. 甲이 乙에게 저지른 행위의 죄책을 논하시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 사례 해결

2. 오부조자인 A를 방치하게 한 행위 - 존속유기죄(형법 제 271조 제2항)의 성부

(1) 존속유기죄의 간접정범의 성부

진정신분범에 있어 비신분자는 신분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바, 비신분자 甲은 진정신분범인 乙의 존속유기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2) 존속유기죄의 교사범의 성부 - 공범과 신분의 문제

① 간접정범의 고의 속에는 교사의 고의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甲은 乙의 존속유기행위에 대하여 교사범은 될 수 있다.

② 그런데 가중적 신분범인 乙의 존속유기행위의 교사범인 비신분자 甲이 가담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에 의하면 甲은 존속유기죄의 교사범이 되나, 과형에 있어서는 단순유기죄에 의해 처벌된다.

③ 그리고 乙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나, 최소한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공범중속형식 중 제한중속형식에 의하여 교사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다. (3)에서 甲의 죄책

1.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 (甲은 乙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면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문자를 받고 겁을 먹은 乙은 甲에게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기출문제 쟁점** 甲은 A사립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B로부터 5억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바(甲에게 배임수재죄 불성립), 甲이 乙을 협박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권리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수단·방법을 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공갈죄가 성립한다.

**출제 문제**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특강 124번 쟁점

(사채업자 甲은 채무자 A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A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甲은 A의 집 근처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던 A의 앞을 막아서면서 "내일 밤 10시경 집으로 찾아갈 것이니, 그때까지 빌린 돈 5,000만 원을 준비해 놔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가족까지도 험한 꼴을 당할 것이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라고 위협한 후 사라졌다. 그 후 甲이 A로부터 채무변  
제자로 돈을 교부받았을 경우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 2. 반복하여 乙에게 협박용 문자를 수 십 차례 보낸 행위 - (甲은 乙이 B로부터 교직원 채용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중 5,000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할 것을 乙에게 요구하면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정채용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문자를 일주일 동안 수십 차례 보냈다.)

**기출문제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외7 제1항 제3호 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의 죄의 성립 여부

**출제 문제** 특별형법사례 특강 16번 사례

(甲은 乙을 도청하고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고, 오히려 乙이 자신과의 대화를 녹취한 사실을 알고는 乙에게 녹음파일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3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여 전송하였다.)

- ▶ 위 기출사례와 동일한 쟁점임.

〈제9회 번시 형법 기록형 기출쟁점 적중 부분정리〉

| 공소사실 |

2. 피고인 김갑동

피고인 김갑동은 2017.11.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1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1) 피고인은 2017.11.19. 12:0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0에 있는 피해자 나이가가 운영하는 등산복 매장 '히말라야' 앞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자가 매장 셔터문을 내리고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이용해 셔터문을 들어 올려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K3 패딩점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출제 문제** 진도별 형법사례 특강 전범위사례 7번 사례

(상습절도 전과자 甲은 고향 선배라서 평소 가깝게 지내던 A가 집에 현금과 귀금속 등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甲은 대담하게도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운 정오 무렵 A의 집 담을 넘어가 1억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서 달아났다. 甲은 훔친 귀금속의 처분을 乙에게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乙은 보석상을 하는 C에게 귀금속의 절반을 시가인 5천만원에 판 후에 甲에게는 4천만원을 판매대금이라고 하면서 이를 건네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다.)

- ▶ 위 기출문제와 동일한 쟁점임.

② **기출문제 쟁점**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인출한 현금에 대한 절도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출제 문제 1**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첨삭 강의(모의고사 7회 문제)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 (2) 피고인은 2017.12.24. 13: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7길 119에 있는 피해자 고향미가 운영하는 '엄마손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캠코더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3) 피고인은 2019.10.31.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김부친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과 예금통장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 (4) 피고인은 2019.10.31. 12:0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에 있는 신한은행 서초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예금통장을 넣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예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위 김부친의 신용카드를 넣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인출하여 합계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가.(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나이가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여신금융규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4)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① **기출문제 쟁점** 상습절도죄의 성부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및 죄수(실체적 경합관계)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乙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결의를 하고 지하철 역 구내를 돌아다니던 중 지하철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든 A의 가방을 몰래 훔쳤다. 역 구내 화장실에 들어가서 A의 가방을 뒤진 甲은 가방 안에서 A의 신용카드와 목걸이 등 값나가는 물건들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선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A의 예금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또 다른 은행으로 가서 3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더 인출하였다.)

- ▶ 위 기출문제와 동일한 쟁점임.

**출제 문제 2**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사례형 대면탐사 강의 (모의고사 5회 문제)

(甲은 2019.11.20. 05:00시경 안양시에서 A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 같은 날 05:30분경 하남시 ○○ 주유소 앞길에 이르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보여주면서 A를 위협하여 택시를 세운 뒤, 청색 테이프로 A의 손과 발 등을 묶은 다음 A를 위 택시의 짐칸에 옮겨 태우고, A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A 소유의 현금과 B은행이 발행한 A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빼앗았다.

甲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B은행 하남지점에 이르러 같은 날 06:30경 위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A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넣고 예금인출 항목 및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A의 계좌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고, 잔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는 다시 위 신용카드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계좌이체 방식으로 40만 원을 甲 자신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또한 甲은 A의 신용카드를 현금서비스 한도액인 2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인출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 ▶ 강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로 타인의 카드를 절취하는 경우와 강취하는 경우는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

3. 피고인 이을남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11.8. 15: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인근 골목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생략) 1개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3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다. 사기방조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3p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11.12. 12:00경 피해자 장호구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위에 이용되었다. 명의를 도용된 것 같으니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1.12. 12: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횡령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통장에 돈을 입금되면 돈을 임의로 인출할 것을 마음먹고, 위 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추가로 발급받은 다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9.11.12. 12:00경 4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11.12. 12:30경 서울 관악구 소재 남부순환로 75에 있는 국민은행 남부순환로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 40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 아들남의 진술

공소사실 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통장과 체크카드가 인터넷 도박사이트 환전에 이용될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기출문제 쟁점** 보이스피싱 사기에서 사기범에게 자신의 계좌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기피해자가 송금·이체한 현금을 인출한 경우 ① 계좌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사기죄의 방조에 해당할 경우와 ② 사기방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로 나누어서 횡령죄의 성부를 검토하는 것이 쟁점임.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출제 문제 1 1순환 형법 빈출쟁점 정리 강의+사례형 대면첨  
삭 강의(모의고사 6회 문제)

(甲은 클럽에서 사기전과자 B를 알게 되어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B는 甲에게 은행에 甲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B가 사기전과자인 사실을 잘 아는 甲은 이 예금계좌가 B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로 행복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甲은 계좌를 개설하면서 별도로 현금카드 1개와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아 B에게 예금통장과 인장, 그리고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직불카드는 자신이 소지하였다. 그 후 B는 강남에 사는 재력이 외제 자동차매매를 핑계로 F를 속여 F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는데, 甲은 자기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입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 ▶ 甲이 자신의 예금계좌가 B의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를 B에게 양도하여 B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다음 사기피해자 F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이체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 지가 문제된다.

출제 문제 2 3순환 진도별 모의고사 사례형 시험(모의고사  
3회 문제)

(甲은 K전자에서 업무비리를 저질러서 제대로 된 퇴직금도 못 받고 해직을 당한 후, 장기간 계속된 실업상태에서 엄청난 경제저인 곤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자산가 A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계획한 F가 현금대출을 해주거나 수고비를 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甲을 유혹하여 甲 명의의 계좌를 F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를 받았다. 그 다음에, F는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A에게 전화를 하여 A의 계좌가 마약사범들의 돈세탁행위에 사용되었다면서 사법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甲 명의의 계좌로 돈세탁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일정액의 현금을 송금해야 한다고 계좌송금을 유도하였다. F에게 속은 A는 5,000만원의 현금을 甲 명의 계좌에 현금을 송금하였다. 자신에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甲은 자신의 거래은행인 W은행에서 A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금전 중 1,0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 사례 (3)에서 甲의 행위가 ① F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방조가 되는 경우와 ② 사기죄의 방조가 아닌 경우로 나누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어서 송금인 A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F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지를 논하시오.)

- ▶ 甲의 행위가 ① F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방조가 되는 경우와 ② 사기죄의 방조가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송금인 A와 보이스피싱 사기범 F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 지가 핵심 쟁점임.

출제 문제 3 4순환 전범위 모의고사+사례형 대면첨삭 강의

| 사례38 | 보이스 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法行32 Case

甲은 클럽에서 사기전과자 乙을 알게 되어 친한 사이가 되었는데, 乙은 甲에게 은행에 甲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乙의 부탁을 받아들인 甲은 자신의 명의로 B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 甲은 계좌를 개설하면서 별도로 현금카드 1개와 직불카드 1개를 발급받아 乙에게 예금통장과 인장, 그리고 현금카드를 양도하였으나, 직불카드는 자신이 소지하였다. 그 후 乙은 외제 자동차매매를 핑계로 A를 속여 A로 하여금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는데, 甲은 자기 계좌로 돈이 송금된 사실을 알고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입금된 돈 중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위 사례에서 甲이 乙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사기종범이 되지 않는 경우와 사기종범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甲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 ▶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하여 사기범 乙에게 계좌명의를 빌려준 甲이 乙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사기종범이 되지 않는 경우와 사기종범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甲이 횡령죄의 죄책을 지는가가 핵심 쟁점임.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 명예훼손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11.3. 12: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1에 있는 피고인 김갑동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나부녀가 행운아파트 부녀회 기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운아파트 부녀회 홈페이지 익명게시판에 '나부녀가 아파트 부녀회 기금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다 썼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기/출/문/제  
[제9회 변호사시험]



적/중/사/례  
[모의고사 출제 문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기출문제 쟁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출제 문제** 특별형법사례 특강 16번 사례

(乙의 댓글을 보게 된 甲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乙이 성형수술을 빙자하여 의사들에게 돈이나 뜯어내는 약 질공갈범이자 인간쓰레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자신의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함께 乙의 댓글 아래 재댓글 형식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甲의 재댓글의 내용은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나중에 밝혀졌다.)

▶ 위 기출사례와 동일한 쟁점임.